-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-

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	제2604호

2021. 5. 12.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안자 : 2021. 4. 29. 이인락 의원 외 6명

나. 회부일자 : 2021. 4. 30. 복지건설위원회

다. 상정일자 : 제285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
2021. 5. 12. 상정 ·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이인락 의원)

가. 제안이유

생활주변에 산재한 큰 나무 및 죽은 나무가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주민에게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,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

나. 주요내용

○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.

○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 등을 규정함(안 제3조).

○ 지원계획 및 지원 대상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 ~ 제5조).

○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,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~ 제8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전문위원 신훈)

○ 폭우,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생활 주변의 수목이 부러지거나 쓰러져 주택 등의 재산 손실 및 구민의 생명에도 위험을 주는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제거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고자함.

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로 정의함.

- 안 제4조는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처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대상지를 명확히 하였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처리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「건축법」제42조제2항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조건으로 지원대상지로 선정 할 것을 규정함.

- 안 제7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- 안 제8조에서는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수 있는 신청 기준을 규정함.

○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,

-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태풍,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생활 주변의 수목이 훼손되어 구민의 생명 및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, 구민이 큰나

무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힘든 상황임.

- 양천구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다세대와 연립 주택 등 주거 밀집 지역의 위험수목 제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으며, 일부 지역에서는 30년 이상 자란 대형수목으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이 우려 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제거 하였으며, 2015년부터 현재까지 1,614주의 위험수목을 정비함.

연도별(2015~2021) 위험수목 정비사업 추진현황

구 분		계	2015	2016	2017	2018	2019	2020	2021
정비 실적	계	1,641	173	262	316	465	162	189	74
	제거(주)	810	105	113	119	266	137	23	47
	전지(주)	831	68	149	197	199	25	166	27

○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및 도시미관 조성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 할 것이라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적의원 8명, 출석의원 8명 만장일치 의결)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